

제 호

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
2. 소 재 지:

3. 업무 범위:

위 기관을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기술표준원장

직인

[변경사항 기록란]

연월일	변경사항	작성자